

'도로 위 시한폭탄' (차량 낙하물, 무보험차량 등) 다쳤다면 보상은 받을 수 있을까?



'도로 위 시한폭탄'(차량 낙하물, 무보험차량 등) 다쳤다면 보상은 받을 수 있을까?
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정부보장사업으로 누구든 정부에서 보상받을 수 있어요.
문의사항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콜센터와 상담하세요.(1544-0049 연결 후 1번)

01

'도로 위 시한폭탄' (차량 낙하물, 무보험차량 등) 다쳤다면 보상은 받을 수 있을까?



국토교통부

02

뺑소니, 무보험차, 차량 낙하물 피해를 받았다면 보상은?

정부보장사업으로
[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] 제30조 제1항에 따라
정부가 보상해 주는 제도

03

자동차 사고... 정부보장사업 신청대상자는?



신청대상자

- 무보험(의무보험 미가입)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
- 뺑소니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
- 도난된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
- 기해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중 떨어진 물체로 인한 사고 피해자 (221.28 이후에 발생한 사고)

※ 다만, 물적 피해는 비해당

04

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피해 입증 서류 제출



신청 필수 서류

- 1 지급청구서(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홈페이지)
-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(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홈페이지)
- 3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또는 교통사고 접수증(경찰서)
- 4 진단서(병원 발급)
- 5 치료비 영수증(병원 발급)

※ 기타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

05

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

| | |
|---------------|---|
| 신청 기한 | 손해 발생을 안 날(통상 사고 발생일)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 |
| 인터넷 신청 |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(https://www.tacss.or.kr) |
| 서면 신청 | 청구서류 구비하여 우편 또는 FAX 신청 |
| 상담 전화 |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(1544-0049 연결 후 1번) |

06

관할 경찰서에 교통사고가 접수되면,
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
피해자의 신청 없이도 먼저 연락하여 안내합니다



**예측하지 못한 교통사고 피해에
신속하고 공정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**

국토교통부

출처: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.korea.kr